

###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초상권 침해)

#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본인이고, 피고는 건강보조식품의 통신판매 및 광고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월 가입 회원들에게 통신판매용 광고전단(다음 부터 광고전단이라고 함)을 배포하여 왔는데, 원고의 동의 없이 위 광고전단에 원고의 초상을 무단 전재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가해자입니다.

#### 2.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 가. 피고는 매월 초 위 광고전단을 발행하여 자신의 가입회원 10여만 명에게 발송하는데 20○○. ○. ○.에 발행한 광고전단 15면에 살빼는 약인 "◎◎"을 광고하면서 "체중감량 1개월에 10kg 달성"이라는 제목으로 광고기사를 작성하고 그 아래 원고의 수영복 입은 가로 5cm, 세로 5cm 천연색 사진을 삽입하고 우측 여백에 "탤런트 ○○○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설명을 붙여 게재하였습니다.
- 나. 그러나 위 광고문안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라는 것은 원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이고 원고는 20○○. ○. 일자미상에 피고로부터 살 빼는 약인 "◎◎"을 복용하여 보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받아 둔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위 약을 복용하고 살을 뺀 사실도 없고, 피고에게 원고가 위 약을 복용하고 살을 뺐다는 내용을 광고하여도 된다는 동의나 승낙을 해준 사실이 없으며, 위 사진이 위 기사에 삽입되어 게재되는 과정에서도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사진과 원고에 대한 기사를 위 광고전 단에 무단 전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마치 위 약을 복용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손해배상의 정도

피고의 위 광고전단은 월 발행 부수가 50,000부에 이르고 원고는 현재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원고의 체중감량이 전적으로 위 약의 복용에 기인하는 것처럼 광고됨으로써 원고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 것이므로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적어도 금 ○○○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위 광고전단발행으로 불



법행위를 행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이른 것입니다.

#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통신판매 광고전단

1통

###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1통1.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1. 소장부본1통

1. 송달료납부서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ul><li>※ 아래(1)참조</li><li>★ 멸 시 효 기 간</li><li>제 척 기 간</li><li>○○년(□ 소멸시효일람표)</li></ul>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기 타	확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
	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
	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
	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
	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
	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
	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
	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
	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
	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함(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지연손해금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